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25
----------	------------

제안년월일 : 2023년 9월 13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대상이 공사 중인 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하자검사 주체가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이관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발주청”을 “관리청”으로 변경하고,
- 안 제6조제2항에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안 제8조의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보완·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를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으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하자관리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라. 의회가 독립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대상에 의회사무처는 삭제함.
(안 제4조)
- 마. 하자검사조서 보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료보관의 편리성을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바.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 사.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 아. 시장이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
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 자.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보완규정을 신설
함.(안 제8조제3항)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를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을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으로, “기관”을 “관리기관(부서)”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시설공사”를 “시설공사 하자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공무원이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관계공무원에 대한 하자검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 중 “서울특별시의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발주청”을 각각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를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 중 “발주청”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전문기관 관계자”를 “관리청, 전문기관 관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를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시설공사”를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발주청 시설공사”를 “관리청 시설물 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주청 시설공사”를 “관리청 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을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발주청 시설공사”를 각각 “관리청 시설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을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③ 시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안 제8조제2항 중 “총괄 관리책임자”를 “총괄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발주청이 발주한”을 “시스템에 등록된”으로, “하자검사 내역”을 “하자검사 및 조치내역”으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u>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u>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해소와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u>“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u> 제4조에 해당하는 <u>기관</u>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u>시설공사</u>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관계공무원이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의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u>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p> <p>제5조(하자검사) ① <u>발주청</u>은 시설</p>	<p>제1조(목적) ----- ----- <u>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u> ----- ----- ----- ----- ----- -----</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1. <u>“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u> ----- <u>관리기관(부서)</u>-----.</p> <p>2. ~ 3. (제정안과 같음)</p> <p>제3조(책무) ① ----- ----- ----- <u>시설공사 하자관리</u>----- ----- ----- -----</p> <p>② ----- <u>관계공무원에 대한 하자검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p>제4조(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u>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u>이 ----- ----- -----</p> <p>제5조(하자검사) ① <u>관리청</u>-----</p>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발주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관리청

③ ----- 관리청

-----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 관리청

----- 관리청, 전문기관 관계자

② -----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
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
리
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
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
의 온라인 입력·관리
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
청 및 감독 기능
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
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
공

<신 설>

6. 그 밖에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생략)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 시설물 -----

② (제정안과 같음)

1. 관리청 시설물 하자 -----

2. 관리청 시설물 -----

3.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

4. 관리청 시설물 -----

5. 관리청 시설물 -----

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
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
육

7. -----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 -----

③ 시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
한 자료 등을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총괄관리책임자-----

③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유지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

은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매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생략)

-- 시스템에 등록된 -----
----- 하자검사 및
조치 내역-----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10조(시행규칙) (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해소와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하자검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하자검사를 실시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리청,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리청 시설물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관리청 시설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7. 그 밖에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및 조치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